

# 2024년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『사방사업법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『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』 제2조제3항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4. 03. 29.

## 진 주 시 장

- 사방지 지정내역 : 2023년 사방사업 사업지
  - 지정사유 : 사방사업 시행지
  - 대 상 지 :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191 외 28개 필지 / 4,723m<sup>2</sup>
  - 지정도면 : 붙임 참조
  - 행위제한 : 사업지에서의 입목, 죽의 벌채, 토석,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,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,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과(☎055-749-87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